

■ 공무원보수규정 [별표 37] <개정 2024. 1. 5.>

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(제56조제2항 관련)

(단위: 천원)

임용직무등급	6등급	8등급	9등급	10등급	11등급	12등급
가산액	8,356	4,126	5,041	4,996	6,138	7,341

비고: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